

September 07, 2015

개정 개인정보 보호 법령 소개

(2) 각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제재 확대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순차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들의 개정 경향은 기존에 없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과징금 내지 벌칙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 수위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최근 개정 내용을 소개한 2015. 8. 31.자 뉴스레터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 법령들의 개정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

2014. 5. 28. 개정되어 2014. 11. 29.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최초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동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 역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 동법상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에서 3%로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던 과징금 상한(1억원)이 삭제되었는데, 이로써 개인정보에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3%로 확대되었습니다.

2. 신용정보법 개정

2015. 3. 11. 개정되어 2015. 9. 12.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용정보법(이하 “개정 신용정보법”) 역시 위와 유사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 신용정보법 제43조의2는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동법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동법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동법을 위반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은 과징금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즉, 개정 신용정보법 제42조의2는, 개인비밀을 업무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와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에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개인비밀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역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법원이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맺음말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의 변화)

이처럼 그간의 각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개정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대폭 확대하면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자료로 1인당 10 ~ 20만원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서 살펴본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개인정보 침해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 또한 300만원 한도 내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손해액의 3배로 상향되어 종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역시 내년부터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

료 산정에 관한 판단기준을 추가로 정비하여 공표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바, 해당 판단기준은 이와 같은 법 개정의 흐름을 적극 반영하여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각 기관이나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행정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훨씬 무거워지는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므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감독에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윤종수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40 | E-Mail. jsyoon@shinkim.com |
| ● 정태성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28 | E-Mail. tsjeong@shinkim.com |
| ● 김기욱 변호사 | TEL. 02 316 1765 | E-Mail. gwkim@shinkim.com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